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 1321 호 2021. 12. 16.(목)

고	시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94호[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사항 고시]
 1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96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
 2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98호[공유수면 점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]
 3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304호[2022년도 예산 고시]
 4

공 고

내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1599호[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지구밖 사업 승인 및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]
 10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1602호[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
 13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1620호[공시송달 공고]
 19
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1590호[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추가모집 공고] ·······

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아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
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

회				
람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94호

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□ 고시내역

혐의	협의	피허)	가자	ג (כ ל כ	면적	취시키기	기 () 디 기	ען דו
협의 년월일	협의 번호	성 명	주 소	점용장소	(m²)	협의기간	점용목적	비고
'21.12.14.	제2021 -12호	울산광역시 북구청장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	울산광역시 북구 당사·어물항 일원	9,845	2021.12.14. ~ 2051.12.13.	당사 어물항 어촌뉴딜 300시업	조건부 협 의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96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제내3길 14	신천동 745-101	2021. 12. 16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북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41-7283)**에 문의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**2021**. **12**. **16**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98호

공유수면 점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□ 고시내역

신고승인	승인	피ਰ	키가자	ג (כ כ)	면적	착공예정	준공예정	771110
신고승인 년월일	승인 번호	성 명	주 소	점용장소	(m²)	일	일	공사내용
'21.12.15.	제2021-3호.	울산광역시 북구청장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	울산광역시 북구 당사 어물항 일원	9,854	2021.12.16.	2022.12.30.	당사 어물항 어촌뉴딜300 사업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304호

2022년도 예산 고시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22년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 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- □ 의회 의결일자 : 2021. 12. 15.
- □ 2022년도 예산내역

(단위 : 천원)

_					<u> </u>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
		011 11 011		전년도			
	구 분	예 산 액	구성비	예산액	구성비	비교증감	증감률
	총 계	440,714,248	100.00	395,383,980	100.00	45,330,268	11.46%
L	.		%		%		
i	일반회계	438,508,794	99.50%	392,747,058	99.33%	45,761,736	11.65%
	특별회계	2,205,454	0.50%	2,636,922	0.67%	△431,468	△16.36%
	기디트버린게	2,205,454	0.50%	2,636,922	0.67%	△431,468	Δ
	기타특별회계	2,203,434	0.30 /6	2,030,922	0.07 /6	△451,400	16.36%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52,916	0.06%	178,120	0.05%	74,796	41.99%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	59,900	0.01%	68,900	0.02%	△9,000	△13.06%
	주차장특별회계	1,892,638	0.43%	2,389,902	0.60%	△497,264	△20.81%

공

□ 일반회계 세입내역

(단위 : 천원)

장・관	예 산 액	구성비	전년도예산액	구성비	비 교 증 감	증감률
총 계	438,508,794	100.00	392,747,058	100.00	45,761,736	11.65%
100 지방세수입	82,375,984	18.79 %	78,037,000	19.87 %	4,338,984	5.56%
110 지방세	82,375,984	18.79 %	78,037,000	19.87 %	4,338,984	5.56%
200 세외수입	25,363,646	5.78 %	24,629,583	6.27 %	734,063	2.98%
210 경상적세외수입	19,997,124	4.56 %	19,399,489	4.94 %	597,635	3.08%
220 임시적세외수입	4,471,922	1.02 %	4,331,694	1.10 %	140,228	3.24%
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	894,600	0.20 %	898,400	0.23 %	△3,800	△ 0.42%
300 지방교부세	18,175,000	4.14 %	13,600,000	3.46 %	4,575,000	33.64%
310 지방교부세	18,175,000	4.14 %	13,600,000	3.46 %	4,575,000	33.64%
400 조정교부금등	53,917,880	12.30 %	46,895,300	11.94 %	7,022,580	14.98%
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	53,917,880	12.30 %	46,895,300	11.94 %	7,022,580	14.98%
500 보조금	248,431,805	56.65 %	221,912,241	56.50 %	26,519,564	11.95%
510 국고보조금등	162,380,864	37.03 %	142,818,195	36.36 %	19,562,669	13.70%
520 시・도비보조금등	86,050,941	19.62 %	79,094,046	20.14 %	6,956,895	8.80%
600 지방채	1,150,000	0.26 %	0	0.00 %	1,150,000	순증
610 국내차입금	1,150,000	0.26 %	0	0.00 %	1,150,000	순증
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9,094,479	2.07 %	7,672,934	1.95 %	1,421,545	18.53%
710 보전수입등	8,000,000	1.82 %	7,000,000	1.78 %	1,000,000	14.29%
720 내부거래	1,094,479	0.25 %	672,934	0.17 %	421,545	62.64%

□ 일반회계 세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	예 산 액		전년도예산액		비교증감	
				구성비		구성비		증감률
	총 계		438,508,794	100.00	392,747,058	100.00	45,761,736	11.65 %
010	일반공공행정		20,236,310	4.61 %	18,992,639	4.84 %	1,243,671	6.55 %
020	공공질서및안전		2,336,439	0.53 %	2,285,196	0.58 %	51,243	2.24 %
050	교육		1,870,460	0.43 %	1,678,503	0.43 %	191,957	11.44 %
060	문화및관광		28,397,875	6.48 %	25,014,581	6.37 %	3,383,294	13.53 %
070	환경		13,459,347	3.07 %	13,122,800	3.34 %	336,547	2.56 %
080	사회복지		231,167,829	52.72 %	208,815,259	53.17 %	22,352,570	10.70 %
090	보건		16,505,714	3.76 %	10,427,346	2.65 %	6,078,368	58.29 %
100	농림해양수산		26,076,213	5.95 %	21,548,536	5.49 %	4,527,677	21.01 %
110	산업 • 중소기업및	실에너지	2,906,306	0.66 %	2,165,949	0.55 %	740,357	34.18 %
120	교통및물류		5,097,357	1.16 %	5,817,253	1.48 %	△719,896	△12.38 %
140	국토및지역개발		23,114,523	5.27 %	19,630,977	5.00 %	3,483,546	17.75 %
160	예비비		3,473,770	0.79 %	3,838,159	0.98 %	△364,389	△9.49 %
900	기타		63,866,651	14.56 %	59,409,860	15.13 %	4,456,791	7.50 %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1590호

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추가모집 공고

보

「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」에 따라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, 울산 북구의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 여하도록 하는 '제1기 울산 북구 청년정책협의체'에 참여할 위원을 아래와 같 이 추가 모집합니다.

2021년 12월 1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모집개요

- O 모집기간 : 2021. 12. 13.(월) ~ 2022. 1. 11.(화) (30일간)
- 신청자격 :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
 -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
 - · 울산 북구 소재 기업, 청년단체, 비영리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※ 정치, 종교, 영업 등을 목적으로 응모하는 사람은 제외함.
- O 활동기간 : 위촉일로부터 2년
- 모집인원 : 12명 이내
- O 제출서류
 - 지원신청서 1부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【붙임 1~2】
 - 필요한 증빙서류(활동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)
- 신청방법 : 모집기간 내 지원서류 작성 접수(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 - · 방문 및 우편 : (44248)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
 - 6층 경제일자리담당관(연암동, 울산북구청)
 - · 팩 스: 052-241-7109

· 이메일 : redball0@korea.kr

O 선정기준: 희망분야, 활동실적, 연령분포, 성비, 지역 등 종합적 고려

O 선정방법: 서류심사 ※ 필요시 인터뷰 심사 병행

○ 결과발표 : 2022. 1월중(개별 문자통보)

2. 주요활동

- O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
- O 청년문제 발굴,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
- O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
- O 국내외 청년 단체·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
- 3. 지원내용 : 회의 참석수당 및 활동비 지급
- **4.** 문 의 처 :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(☎ 052-241-7716)

붙임 1 지원신청서

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지원 신청서

접수번호	※ 지원자가 별도로 작성하	하지 않습니다.	※ 지원자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.									
성 명	성 별	생년월일										
연 락 처	핸드폰	e-mail										
인탁자	주 소											
소 속	예)00대학교 00학과 0년 재)00대학교 00학과 0년 재학중, 회사원은 회사명 부서 직책 등										
관심분야	①일자리 ②주거・교육 ③특	록지•문화 ④참여•권리 중	등 선택(중복 가능)									
	기 관 명	분야(과정)	기 간									
활동경력												
2001												
	활동분야	활동내용 	기 간									
기타활동												
	TLO LI	술 (별지 작성 가능)										
		물 (물시 극경 기증) 등의지/ 본인 관심분야 활동계	획 등									
자기소개												
	* 본인이 생각하는 울산 북구의 청년문제, 지역차원의 대안 등											
울산 북구	* 본인이 생각하는 물산 국 	구의 성년문제, 시역사원의	내안 등 									
청년문제에												
대한 생각												
본인은 4	L정의 서류를 갖추어 울산공	방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	위원으로 신청합니다.									
		2021년 월	일									
		신청인 :	(서명)									
울산광역시	북구청장 귀하											

공

붙임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

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고지 사항								
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	울산 북구 청년	정책협의체 구성・운영에 홀	날용					
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		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E-mai 맛 및 제출서류 기재 사항	il, 경력사항 등					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접수일부터 조사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·이용, 다만 위촉되는 경우 해촉 시까지 보유·이용							
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	동의 거부 시에는	신청서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	구.					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	라적 동의 □	동의함 🗆 동의하지	않음					
								
□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	고지 사항 							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		울산광역시 북구청						
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	정보 이용 목적	울산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	성 · 운영에 활용					
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		이름, 생년월일, 연락처, 경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	병력 등 지원서					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	로유 및 이용 기간	조사목적 달성 시까지						
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								
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□	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						
	00011로 의	OI						
	2021년 월	일						
		신청인 :	(서명)					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히	<u> </u>							

2021. 12. 16.(목요일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1599호

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지구밖 사업 승인 및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

공

상안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지구밖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공공주택 특 별법 | 제10조, 제52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 민에게 열람하고 토지소유자,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 람 공고하오니, 본 사업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2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- 1. 사업의 개요
 - 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
 - 명칭 : 상안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(선형변경 및 포장공사)
 - 나. 사업시행지 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일원
 - 다. 사업의 규모: 541m²(중로3-172호선선형변경 및 도로개설)
 - 라. 사업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
 - 명칭 : 울산도시공사
 - 주소 :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
 - 대표자의 성명 : 한 삼 건
 - 마. 사업의 시행기간 : 승인일 ~ 2022년 12월31일
- 2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1. 12. 16. ~ 2021. 12. 30.(토·일요일 및 공휴 일은 휴무)

- 3. 열람장소(의견접수) :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(☎ 241-7913), 울산도시공사 주택사업팀(☎ 219-8452)
- 4.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"안" 도서는 상기 열람 장소에서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도시공사 주택사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붙임 :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

(ماحا	소재지			면적	(m²)		소유자			관계인		
일련 번호	일련 (울산 번호 광역시 북구)		지번 지목		편입 면적	성명	<u></u>	공유 지분	성명	<u></u>	권리 내용	비고
합 겨	1)			6,523	541							
1	상안동	351	임	833	61	박원*	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**로24, 106동1002호 (상도동, 이이파크상도동아파트)					
2	상안동	352-1	전	93	39	울산광역시 북구	-					
3	상안동	355-21	임	197	92	이상*	경상북도 경주시 새*길 67-69(구정동)					
4	상안동	1210-1	도	3,156	6	국(농림축산식품부)	-					
5	상안동	1210-24	도	243	19	국(농림축산식품부)	-					
6	상안동	354-5	임	751	3	울산광역시 북구	-					
7	상안동	355-19	임	429	123	울산광역시 북구	-					
8	상안동	358-40	대	145	145	울산광역시 북구	-					
9	상안동	358-55	대	53	53	울산광역시	-			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1602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곳

「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우리 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자 융자규모 내용을 추가 명시하는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중소기업 융자금액 부분에 관한 사항(추가) 신설(안 제4조제3항)

3. 관계법령

- O 「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4조
- O 「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

4. 입법문안 : 붙임 참조

5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경제일자리담

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라. 제 출 처
 - 1)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
 - 2) 전화번호 : 052)241-7711, 팩스번호 : 052)241-7709
 - 3) 전자우편(E-mail) : cutegirl0922@korea.kr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|--|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0	. 견	刊	고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1년 월 일

제출자: 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

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조건·한도액 및 융자금리를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	정	안	
제4조(융자금액 등) ①・② (생	략)	제4조(구	성) ① ·	• ② (현행과	같음)
<u><신 설></u>		<u>③ 구</u>	청장은	조례	제42	<u> 전제3항에</u>
		따라	자금을	지원	하는	경우에는
		제1항	및 제2학	항에도	불구さ	하고 융자
		조건 •	한도액	및 융	·자금리	기를 정할
		<u>수 있</u> 다	<u>7.</u>			

관 계 법 령

□「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

제4조(자금의 지원대상) 자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.

- 1.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
- 2.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
- 3.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

□「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

제4조(융자금액 등) ① 융자금액은 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하고,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.

② 융자금리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(이하 "금융기관"이라 한다)과의 협약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1620호

공시송달 공고

하천구역(성안천) 내 「하천법」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,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공고내용: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: 2021. 12. 16. ~ 2021. 12. 30. (14일간)

3. 공고장소: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

4. 무단점유 현황

재산의 표시		무단점유현황				¬
소 재 지	번지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점유면적 (m²)	비고
북구 가대동	908-17번지	미상	미상	불법점용	90	

5. 공시송달내용

「하천법」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, 2021. 12. 29.(수)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, 기한 내 미이행 시 「하천법」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